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10. 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 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20조)

○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신설

[안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안 제22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20조는 「지방자치법」 용어와 맞추어 '주민'을 '주민'으로 개정함.
-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7장)으로 의견제출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2조), 의견제출 방법(안 제23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24조), 의견제출 검토(안 제25조) 및 의견의 반영(안 제26조)과 의견제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차별대우의 금지(안 제27조),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28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자치법규안'에 준하여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과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방법 규정(안 제23조~제24조)
- 나. 의견제출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문서로 통보(안 제25조)
- 다.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 제정, 개정·폐지 추진(안 제26조)
- 라. 의견제출인에 대한 권리 보호(안 제27조~제2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
  -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2. 6. 30. ~ 7. 20.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민의 권리·의무”를 “주민의 권리·의무”로, “구민의 일상생활”을 “주민의 일상생활”로,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민과”를 “주민과”로, “구민·법인·관련단체”를 “주민·법인·관련단체”로, “구민의”를 “주민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구민에게 과도한”을 “주민에게 과도한”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민에게 불편”으로 한다.

제7장(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제22조(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

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u>구민의 권익증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입법예고”란 <u>구민의 권리·의무</u> 또는 다수 <u>구민의 일상생활</u>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u>구민에게</u>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p> <p>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u>구민과</u> 이해관계에 있는 <u>구민·법인·관련단체</u>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u>구민의 이익</u>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주민</u>-----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주민의 권리·의무</u> ----- <u>주민의 일상생활</u>----- ----- ----- <u>주민에게</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주민과</u> ----- ----- <u>주민·법인·관련단체</u> ----- ----- ----- <u>주민의</u> ----- ----- -----.</p>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생략)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생략)

<신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 -----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  
-----  
-----  
-----  
-----.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주민에게 과도한 -----  
-----  
주민에게 불편-----  
-----
4. (현행과 같음)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신 설>

<신 설>

### 의견 제출

제22조(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

<신 설>

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

<신 설>

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신 설>

<신 설>

<신 설>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 ] 대표자	
	주소	의정부시 원곡동 1가 100-1호	
※ 비공개 요청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비공개 ( )를 신청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아무런 불기 사용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공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하지 않음	대표자 인칭 : [ ] 남 [ ] 여
의견	※ 취지와 이의충 명확하게 밝혀 적음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문장이 잘못 일부 불기 사용		
「개인정보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지침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 x 297m [4급지 2면 / 1면 또는 2면지 2면 / 1면]			